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8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9년 시행예정 회계기준 [K-IFRS]사전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5-8층,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9년 시행 예정 회계기준(K-IFRS) 사전 안내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2018.7.16]

개요

1. 개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상반기에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외 6개 기준서(시행일 '19.1.1)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구분	제.개정일	시행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3 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17. 12. 15.	'19.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 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18. 1. 26.	'19. 1.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개정	'18. 2. 28.	'19. 1.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 호 '사업결합' 개정	'18. 4. 27.	'19. 1. 1.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1 호 '공동약정'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 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3 호 '차입원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 호 '종업원급여' 개정	'18. 5. 25.	'19. 1. 1.

이 개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18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2. 새로운회계기준의 상세내용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

(1)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K-IFRS 제 2123 호)

□ (개정 사유) 현행 K-IFRS 제 1012 호 '법인세'에서는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예: 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기·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 회계처리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실무 회계처리를 일원화

□ (주요 내용)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이하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

○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

○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

과세 당국의 수용 가능성	산정 방법
① 높다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② 높지 않다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②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

o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개정 사유)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자산에 속하는 투자지분(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경우, K-IFRS 제1109호 또는 K-IFRS 제1028호의 손상 요구사항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음

(주요 내용)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K-IFRS 제1109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o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 처리에 대해 K-IFRS 제1028호의 요구사항보다 K-IFRS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금융상품

(3)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개정 사유) 중도상환할 수 있는 특정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SPPI*)을 나타내는지와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o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의 조기청산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부(-)의 보상)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o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재계산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처리의 다양성 개선

(주요 내용)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과 관련하여 기준서 본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였으나,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 않음

o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부(-)의 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부(-)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을 명확히 함

o (금융부채의 변경 또는 교환) 금융부채가 변경 또는 교환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때의 회계처리 원칙을 결론도출근거에 제시

연차개선

(4) 연차개선 2015-2017

① 사업결합(K-IFRS 제1103호)

(개정 사유)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시,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 내용)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o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도록 함

② 공동약정(K-IFRS 제1111호)

(개정 사유)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주요 내용)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o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함

③ 법인세(K-IFRS 제1012호)

(개정 사유) IASB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관한 지급(예: 이익 분배)의 법인세 효과를 당기손익 또는 자본 중 어떤 항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o K-IFRS 제1012호 문단 57A(개정 전 문단 52B)의 규정이 문단 52A에서 기술된 상황(예: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에 대해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주요 내용) K-IFRS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o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함

④ 차입원가(K-IFRS 제1023호)

(개정 사유) IASB는 적격자산¹⁾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자산이 현재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²⁾,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1)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종업원급여

□ (주요 내용)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5) 종업원급여(K-IFRS 제1019호)

□ (개정 사유)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하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의 종전 회계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준서를 개정함

○ 종전 기준서에서는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그 시점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사외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하지만,

- 이후에 인식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금액과 무관한, 기초에 결정된 보험수리적가정과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여,

- 제도의 개정 등의 효과가 유의적인 경우, 기초 가정과 금액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제기

○ 또한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관행 존재

□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이 규정을 명확히 함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 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

①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②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는 다음을 사용하여 측정

- 상기 ②를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

○(자산인식상한효과)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8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8.7.30)

2018 세법개정안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기획재정부는 2018. 7. 30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세액공제 고액기준금액 인하(2천만원→1천만원)
 -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 15% 공제, 2천만원 초과 :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공제, 1천만원 초과 : 30% 공제
-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5년→10년)
 -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개인) 100%, (법인) 50%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30%)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법인 포함)
 -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3)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
(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4)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
- (5) 국외전출세* 강화
 -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 (6)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7)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7월 시행)
 - * 세율: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9)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를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과 ※ '20.1.1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현행) (과세·경영사업자) 부가세법상 미등록가산세: 과세공급가액의 1%
(개정) (면세사업자)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면세공급가액의 0.2%

(1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최근 제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종료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2년간 50% → 5년간 50%) ※ 적용기한 3년 연장

* ①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2)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25%→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4)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 (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증견(7백만원). 중소기업(1천만원) 세액공제

조세체계 합리화

3. 조세체계 합리화

(1) 국제조세 관련 OECD등 기준 반영

○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를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장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 초과	80%초과	100%	100%
30% ~ 40%	50% ~ 80%	80%	90%
20% ~ 30%	40% ~ 50%		80%

(3)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①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②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 ① 1:3:10%, ②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 * 18년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① 안전, 환경 복지 관련 시설	1:3:7	1:3:10 (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7(10*):7(10*):10	
R&D 설비 ('18년 적용기한)	②R&D, 생산성 에너지관련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1:3:6	

*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된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 ①(신성장산업 설비)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 ②(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 ③(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4)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1일 0.03%(연 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중인 해외사례 없음

	'19년	'20년
납부불성실가산세	日 0.03%→0.025%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日 0.025%)
가산금	月 1.2%→0.75%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

2018년 8월호

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
(거래대금의 50%→20%)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

(6)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

○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 축소 (공제율: 10%→5%)

(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내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5충1147, 2018.07.05)

 - 납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그 주장의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국의 조세제도에 입각하여 정확한 규명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2.12.28. 선고, 80누316 판결)으로, 쟁점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입각하여 쟁점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조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인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것임.
 -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라 함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아닌 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국가에 적법하게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7조에서 ‘기업이 타방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외국법인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2018.08.14)

 -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고 같은 법 제441조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
 - 다음 사업연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